

도시정비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1. 품격있는 광고물 문화 실현

- ◆ 지속적인 정비로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요건 구비 무허가 간판 양성화를 통하여 불법 간판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도시미관 제고와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간은 3년 이내이며, 기간이 만료되는 광고물 허가자에 대해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전 안내문을 매월 1회 발송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 경과 후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실 때에는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화로운 도시계획수립과 개발행위허가

- ◆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불합리한 시설은 재정비하여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도시계획 수립 시 공람·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는 신청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도시계획내용,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방문, 전화,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하수시설의 확충 정비

- ◆ 고정천 등의 하천과 우리 구 지역 내 하수구에 대하여 준설종사원을 편성·운영하고 담당별 구역을 지정, 분기1회 이상 점검하여 퇴적된 토사를 적기에 준설하여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특히, 노후되어 파손된 횡단측구 및 측구뚜껑, 불량 하수 맨홀, 하수 누수 등 관련 민원은 타 업무보다 우선하여 교체·정비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서비스별 접수·문의 창구

서비스명	담당	전화번호	팩스 (FAX)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처리 불법광고물 정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고물관리담당	220-4711~8	220-4719
도시관리계획업무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도시계획담당	220-4732~5	
연안정비사업 친수공간조성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	도시개발담당	220-4721~5	
하수도정비	하수관리담당	220-4682~8	

5. 구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지역·장소(도로표지,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담장 등)에 불법 현수막·벽보·간판 등을 설치하게 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오니, 구청에 허가를 받아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여 불편 사항이나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즉시 연락하여 주시고,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미한 불편 사항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